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84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0.

발 의 자 : 민형배 · 주철현 · 이개호
박지원 · 최혁진 · 조계원
양부남 · 위성곤 · 이성운
김용민 · 문정복 · 소병훈
김문수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모든 장애인에게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정신 재활훈련시설에서 도급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도 부담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

현행법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사업주는 매년 부담금을 납부합니다. 이 부담금은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품을 납품받으면 감면됩니다.

이는 모든 장애인 시설에 적용되어야 하는데,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만 제외되어 있습니다. 사업주들이 고용에 매우 소극적인 장애 유형인 정신장애인 고용률은 23.6%에 불과합니다. 정신장애인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감면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.

이에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

를」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에서 도급 생산품을 납품 받는 사업주도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으로, 모든 장애인에게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(안 제33조제4항).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4항 중 “표준사업장 또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”을 “표준사업장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업주의 부담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) ① ~ ③ (생략)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의 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 애인 <u>표준사업장 또는 「장애인 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3호 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 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 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.</u>	제33조(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<u>표준사업장, 「장애인복지 법」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 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「정신건 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 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⑤ ~ ⑪ (생략)	⑤ ~ ⑪ (현행과 같음)